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43호 2016. 6. 29 (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2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3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04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6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64호 환지계획 인가고시 16

거창군 고시 제2016-65호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고시 17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672호 「거창군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

거창군 공고 제2016-678호 2020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26

거창군 공고 제2016-680호 공시송달 공고 27

거창군 공고 제2016-681호 공시송달 공고 28

거창군 공고 제2016-682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9

거창군 공고 제2016-683호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0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6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32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0	281 295	14	133 128	70 65	63	53 49	40 37	149 147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38 637	277 292	14	106 100	43 37	63	52 47	40 37	149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99 598	263 278	11	100 94	39 33	61	48 43	39 36	138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6	2 1		2 3	2 3		1 2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31
----------	-----------

제출연월일	2016.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조직진단 결과반영 및 민선6기 하반기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 증원

○ 현행: 598명(본청278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3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599명(본청263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8명, 읍39명, 면138명)

나. 연구직 정원: 1명 감원

○ 현행: 6명(본청1명, 직속기관3명, 사업소2명)

○ 조정: 5명(본청2명, 직속기관2명, 사업소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등 인

2016년 6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204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중 “강령”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를 “군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를 “군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군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포함) 공무원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5조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인 경우
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장동료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해당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이를 총괄·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책 또는 계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공포될 때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사업
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3. 주택·도시주거환경정비
4.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
5. 도로시설계획
6. 관광개발계획

7.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
8. 공유재산관리
9. 공유수면관리
10.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사항

제14조제1항제2호 중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를 “한정하여 3만원 이내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차 등 음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1인당 3만원 이내의)”를 “3만원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제14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안된다.”를 “아니 되며,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외의 본문 중 “받은”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규칙</u>----- ----- ----- -----</p>
<p>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u>민원 사무</u>를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p> <p>나. ~ 마. (생략)</p> <p>바.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u>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p> <p>사.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u>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p> <p>아.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u>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원</p> <p>자. ~ 하. (생략)</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u>규칙</u>----- -----</p> <p>1. (현행과 같음)</p> <p>가.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u>따른 민원</u>을----- -----</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군과</u>----- -----</p> <p>사. <u>군으로부터</u>----- -----</p> <p>아. <u>군이</u>----- -----</p> <p>자. ~ 하.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u>거창군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거창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u>거창군 소속(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포함) 공무원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 의사에게 적용한다.</u></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 3. (생략)</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4.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 ③ (생략)</p>	<p>4.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 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인 경우 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장동료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9.-----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신 설></p>	<p>제5조의2(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해당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이를 총괄·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p> <p>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생략)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 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3. ~ 5. (생략)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생략)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 8. (생략)</p>	<p>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책 또는 계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공포될 때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사업 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3. 주택·도시주거환경정비 4.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 5. 도로시설계획 6. 관광개발계획 7. 농공단지지정 및 개발 8. 공유재산관리 9. 공유수면관리 10.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사항</p> <p>③----- -----</p> <p>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한정하여 3만원 이내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차 등 음료----- ----- 3. ~ 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②----- ----- ----- 1. (현행과 같음) 2. -----한정하여 3만원 이내의----- ----- 3.~ 8.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9. 소속직원이 퇴임하는 경우에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1명당 3만원 이내에서 전달하는 꽃·기념품 등 선물</p> <p>③ (생 략)</p> <p>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p> <p>① (생 략)</p> <p>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4조의3(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의 제한)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제14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아니 되며, 직무 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p> <p>④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 -----규칙-----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u>강령</u>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u>규칙</u>-----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 ----- -----<u>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2조(교육) ① 군수는 <u>소속 공무원</u>에 대하여 이 <u>강령</u>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u>강령</u>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하기 위하여 <u>타</u> 교육기관에 이 <u>강령</u>의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22조(교육) ① -----<u>공무원</u> -----<u>규칙</u>----- ----- ----- ②----- <u>규칙</u>----- ③----- -----<u>다른</u>-----<u>규칙</u>----- -----</p>
<p>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략)</p> <p>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u>강령</u>의 교육·상담, 이 <u>강령</u>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p> <p>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u>강령</u>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p> <p>④ (생략)</p>	<p>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규칙</u>----- ----- ----- ③ -----<u>규칙</u>----- ----- ----- ④ (현행과 같음)</p>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군수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이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 여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6 ~ 18
----------	-----------

제출연월일	2016. 5. 18.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안」 반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내용 반영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조)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여부 상담 대상자 추가함(안 제5조)

다.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규정 신설함(안 제5조의2)

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12조)

마.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중 예외사유 변경함(안 제14조)

○ 삭제: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3만원 이내의 선물

○ 변경: 직원퇴임 시 같은 부서 직원들이 전달하는

1명당 3만원 이내의 선물 ⇒ 3만원 이내의 선물

바.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의 제한 대상 추가함(안 제14조의3)

사. 외부강의·회의등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15조)

○ 강의·강연의 대가에 원고료가 포함되도록 명시함(안 별표)

○ 외부강의·회의등의 횟수: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원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3. 14. ~ 4.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농어촌정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대야(중유, 대야, 무촌, 둔동, 역촌)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22일

거창군수

1. 사업지구명 : 대야(중유, 대야, 무촌, 둔동, 역촌)지구 경지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종전 및 환지 토지내역

지구	구분 (종전·환지)	내역	환지 청산금(원)
대야(중유)지구	종전토지	소유자 총28명, 면적58,282.0㎡	37,473,680
	환지토지	소유자 총23명, 면적58,382.4㎡	
대야(대야)지구	종전토지	소유자 총17명, 면적28,335.0㎡	47,594,800
	환지토지	소유자 총15명, 면적28,249.6㎡	
대야(무촌)지구	종전토지	소유자 총 7명, 면적12,986.0㎡	5,291,200
	환지토지	소유자 총 4명, 면적12,924.6㎡	
대야(둔동)지구	종전토지	소유자 총20명, 면적36,414.0㎡	29,807,850
	환지토지	소유자 총17명, 면적36,345.8㎡	
대야(역촌)지구	종전토지	소유자 총16명, 면적44,030.9㎡	31,403,070
	환지토지	소유자 총10명, 면적43,970.9㎡	

4. 사업구역 : 경남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남하면 대야리, 남상면 무촌·둔동리, 가조면 역촌리 일원
5. 인가내용 : 개인별 환지계획은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된 대야(중유, 대야, 무촌, 둔동, 역촌)지구 환지계획서와 같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제21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거창군수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477,065,327	447,910,156	29,155,171	6.51%
일반회계	계	420,918,089	399,802,877	21,115,212	5.28%
특별회계	계	56,147,238	48,107,279	8,039,959	16.71%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8,693,300	21,645,192	7,048,108	32.56%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0,247,549	7,433,185	2,814,364	37.86%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8,445,751	14,212,007	4,233,744	29.79%
	기타특별회계	27,453,938	26,462,087	991,851	3.7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77,135	736,331	40,804	5.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07,000	0	507,000	순증
	주차장관리특별회계	860,922	860,922	0	0.0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79,718	1,679,718	△200,000	△11.91%
	수질개선특별회계	4,541,995	4,164,718	377,277	9.06%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3,870	703,870	0	0.00%
기반시설특별회계	55,770	35,000	20,770	59.34%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8,527,528	18,281,528	246,000	1.35%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77,065,327	447,910,156	29,155,171	6.51 %
지방세수입	19,898,290	19,898,290	0	0.00 %
세외수입	17,295,094	15,265,117	2,029,977	13.30 %
경상적세외수입	10,019,092	9,998,102	20,990	0.21 %
임시적세외수입	7,276,002	5,267,015	2,008,987	38.14 %
지방교부세	176,584,000	192,573,683	△15,989,683	△8.30 %
조정교부금등	15,247,000	10,000,000	5,247,000	52.47 %
보조금	140,331,956	135,587,848	4,744,108	3.50 %
국고보조금등	112,421,802	110,807,512	1,614,290	1.46 %
시도비보조금등	27,910,154	24,780,336	3,129,818	12.6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7,708,987	74,585,218	33,123,769	44.41 %
보전수입등	86,811,831	53,848,791	32,963,040	61.21 %
내부거래	20,897,156	20,736,427	160,729	0.78 %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77,065,327	447,910,156	29,155,171	6.51%
일 반 공 공 행 정	30,607,774	28,590,587	2,017,187	7.06%
공 공 질 서 및 안 전	6,325,755	6,315,812	9,943	0.16%
교 육	7,090,764	4,826,844	2,263,920	46.90%
문 화 및 관 광	11,365,277	11,617,829	△252,552	△2.17%
환 경 보 호	66,881,173	58,492,330	8,388,843	14.34%
사 회 복 지	91,239,672	86,384,597	4,855,075	5.62%
보 건	7,307,254	7,234,334	72,920	1.01%
농 립 해 양 수 산	100,397,805	95,234,570	5,163,235	5.42%
산 업 · 중 소 기 업	7,618,759	7,605,519	13,240	0.17%
수 송 및 교 통	20,927,737	17,629,157	3,298,580	18.7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6,681,887	27,427,784	9,254,103	33.74%
예 비 비	30,719,056	36,777,464	△6,058,408	△16.47%
기 타	59,902,414	59,773,329	129,085	0.22%

「거창군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임차인에 모든 책임전가 규제완화 사항 조례반영으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소 이용부담 경감 및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60% 넘지 않도록 강제규정으로 변경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47)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농업
축산과)

○ 전화 : 055-940-8214, 팩스 : 055-940-8119, 이메일: lcs1613@korea.kr

붙 임 「거창군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일부개정
(안) 1부. 끝.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연월일	2016. 06.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민법제750조와 달리 농기계 출고 후 사고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진다고 규정된 조례를 과실여부에 따라 상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완화하여 임차인이 임대사업소 이용부담을 들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차인에 모든 책임전가 규정 조례 완화(안 제14조제4항)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안 제19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 여성아동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6. 6. 24 ~ '16. 7. 14 (20일간)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를 “임차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4조(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대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p> <p>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u>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u></p>	<p>제14조(책임 및 변상) ① --</p> <p>-----</p> <p>-----</p> <p>-----</p> <p>② -----</p> <p>-----</p> <p>-----</p> <p>③ -----</p> <p>-----</p> <p>-----</p> <p>-----</p> <p>--</p> <p>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u>임차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u></p>	<p>○ 규제개선</p> <p>○ 「민법」(제750조) 상 손해배상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개선함</p>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u>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 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소장이 임명</p>	<p>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u>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p> <p>-----</p> <p>③ -----</p> <p>-----</p> <p>-----</p> <p>-----</p> <p>-----</p>	<p>○ 성별영향분석평가</p> <p>○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강제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강제규정으로 변경함</p>

<p>또는 위촉한다.</p> <p>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관리담당으로 한다.</p>	<p>④----- ----- -----</p>	
--	-----------------------------------	--

관계법령

□ 「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거창군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거 창 군 수

1.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6. 6. 30 ~ 7. 22 (20일간,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2 거창군관리계획(안) : 관련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열람.

3. 의견 제출방법 : 위 열람 기간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583), FAX(055-940-3579), E-mail : cchojh@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6월 28일

거 창 군 수

- 공고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 2016. 06 29. ~ 2016. 07. 13.(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 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거 창 군 수

- 공고제목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6. 06. 29. ~ 2016. 07. 13.(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관내 자전거보관소 및 도로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하오니, 해당 자전거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거창군수

1. 공고기간 : 2016. 6. 28. ~ 2016. 7. 12.
2. 방치장소 : 관내 도로 및 자전거보관소 등
3. 공고대상 : 무단방치자전거 2대(별첨 열람부 참조)
4. 처분내용 :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해당자전거를 매각 또는 기증하며,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을 우리 군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우리 군 금고에 귀속됨.
5. 문의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940-3596)

□ 별첨 : 2016년무단방치자전거 열람대장

종류	색상	제조사	방치장소	수거예고일	이동보관일	보관장소	관리번호	처리현황
사이클	검정색	삼천리	거창읍대동리 윤제통통증의원앞	2016-06-13	2016-06-28	거창읍대평리 쓰레기매립장	2016-28	보관중
MTB	은색	삼천리	거창읍대동리 윤제통통증의원앞	2016-06-13	2016-06-28	거창읍대평리 쓰레기매립장	2016-29	보관중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거창근대의료박물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위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박물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자료·유물 등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근대 의학, 생활사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박물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 필요시 위탁운영
-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음

다. 박물관의 개관, 관람,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내지 제7조)

- 개관 및 휴관 : 매일 개관(휴관일 : 월요일, 설날, 추석)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관람금지 :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자, 음주 등으로 전시 및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 행위제한 : 흡연 또는 음주 행위,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고성 등으로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등

라. 박물관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용신청서(별지 1) 제출

마. 박물관 자료의 구입, 기증, 대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1조)

-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
-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무상기증 원칙 기증자에게 기증 증서,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 증정
-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 할 수 있음
- 소장 자료의 망실, 훼손, 도난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와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음

바. 자료감정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자료의 수집 또는 감정평가를 위해 자료감정심의회를 구성 운영
- 심의회는 3명이상으로 구성, 위원장은 출석 위원중 호선
- 심의회 의사결정은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함

4. 입법예고기간 : 2016. 06. 29. ~ 2016. 7. 19.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jhj20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34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시장 1길 32에 둔다.

제3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유물 등(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배포
3. 근대 의학, 생활사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4조(운영) ① 박물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효율적인 운영 및 자료 수집·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휴관일은 설날, 추석,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박물관의 관람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시설 사용허가)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자료의 구입 및 기증) ① 군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기증 증서,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0조(소장 자료의 대여) ① 군수는 소장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장 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박물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소장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소장 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장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감정심의회)** ① 군수는 자료의 수집 또는 감정평가를 위하여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자료감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입 대상 자료의 성격과 양에 따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자료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정평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자료의 수집 또는 감정 평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④ 심의회의 의사결정은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박물관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소 장 자 료 기 증 서

명 칭	수 량	규 격	비 고

본인 소유의 위 소장품을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에 기증(양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 장 자 료 기 증 확 인 서

□ 기 증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주 소			

□ 기증품 목록

명 칭	수 량	규 격	비 고

귀하 소유의 소장품을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에서 정히 기증(양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근대의료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